



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환경본부



수신자 내부결재

(경유)

제 목 평택축협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폐기물처리용역(혼합폐기물 외 3종) MIS소액수의 발주계획(안) 보고

1. 관련문서

- 가. 시설사업3부-2199(2026.07.14)호.
- 나. 환경안전경영부-2704(2026.07.20)호.

2. 「평택축협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」의 폐기물처리용역(혼합폐기물 외 3종) 기 계약업체가 관련 업종을 타사로 양도함에 따라 “지방계약법” 제30조의2 제1항 제6호(계약상대자의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·인가·허가등의 취소)에 의거 계약을 해지하여, 잔여 폐기물(혼합폐기물 외 3종) 수량에 대하여 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”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11조 등에 의거 발주하고자 불임과 같이 보고합니다

- 불임 1. 폐기물처리용역 발주계획(안) 1부.
2. 발주서류 1식. 끝.

★주임 박인구 대리 유상원 부장 07/23 김주한

협조자

시행 시설사업3부-2295 (2026. 7. 23.) 접수

우 18021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도시지원1길 29 7층 한국환경공단 감독실
전화 031-668-8622 /전송 031-668-8623 / park7208@keco.or.kr

()
/ https://www.keco.or.kr
/ 비공개(5)